#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75 발의연월일: 2024. 12. 17.

발 의 자: 박상혁 · 이해식 · 이인영

김주영 • 한민수 • 정준호

염태영 • 이연희 • 강훈식

조승래 • 한준호 • 김한규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12월 4일 새벽,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에 대하여 국회가 계엄의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윤석열은 새벽시간 국무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계엄 해제를 지연시켰음. 지연된 시간동안 국가적 혼란이 계속 이어진 바,향후 이러한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대하여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역시 계엄이 선포된 이후라고 하여도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선포 이후 국회 봉쇄를 비롯한 국회의원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 방해 행위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가 있었던 바,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의 활동과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에서 국회의 기물이 다수 파손되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국유재산 혹은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보상의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가 의결로 계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전이라 하여도 즉시 계임의 효력이 중지되도록 하고, 계임사령관은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도록 하며, 계임으로 인한 재산 손실에 대하여개인, 단체, 법인 또는 국·공유재산의 관리자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임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신설등).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계엄사령관의 작전 수행에 따라 재산의 손실을 입은 개인, 단체, 법인 또는 국·공유재산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의 기간 안에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의4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기 전이라도 계엄의 효력이 즉시 중지된다.

제13조의 제목 중 "불체포특권"을 "활동 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계엄사령관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고 국회의 기능을 수호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	제9조의2(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
에 대한 보상) ①·② (생 략)	에 대한 보상) ①・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계엄사령관의 작전 수행에
	따라 재산의 손실을 입은 개인,
	단체, 법인 또는 국·공유재산
	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보
	<u> 상청구의 기간 안에 손실에 대</u>
	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u>③</u> ~ <u>⑤</u> (생 략)	$\underline{4} \sim \underline{6}$ (현행 제 $3$ 항부터 제 $5$
	항까지와 같음)
제9조의4(보상 제외) 파괴 또는	<u>&lt;삭 제&gt;</u>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	
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	
<u>다.</u>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생 략)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	2
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	
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③ (생 략)

 제13조(국회의원의 <u>불체포특권</u>)

 (생 략)

 <u><신 설></u>

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 구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기 전이 라도 계엄의 효력이 즉시 중지 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국회의원의 <u>활동 보장</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계엄사령관은 국회가 정상
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의원의 활동을 보호하고 국회